

제4장

팀 등록규정

제정 1997년 1월 1일
개정 1998년 1월 1일
개정 1999년 1월 1일
개정 2000년 1월 1일
개정 2001년 1월 1일
개정 2002년 1월 1일
개정 2003년 1월 1일
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5년 1월 1일
개정 2006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09년 1월 1일
개정 2010년 1월 1일
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2012년 1월 1일
개정 2013년 1월 1일
개정 2014년 1월 1일
개정 2015년 1월 1일
개정 2016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월 1일
개정 2018년 1월 1일
개정 2019년 1월 1일
개정 2020년 1월 1일

제1조 총칙

본 규정은 국제자동차연맹(이하 FIA라 한다)과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이하 KARA라 한다)의 공인 하에 행하여지는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 등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팀의 등록

2.1 KARA 공인 자동차 경기에 참가하려는 팀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ISC규정) 및 부칙과 이에 기초한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과 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반드시 KARA에 등록하여야 한다.

2.2 등록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KARA에 신청하는 것으로 한다. 단 KARA가 지정한 협의체에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밝히고 등록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2.3 팀 구분과 참가 가능 대회

팀	챔피언십	컵, 트로피, 챌린지, 기타대회	비고
영구	○	○	선수 B, C 라이선스 추천 가능
단기	○	○	선수 C 라이선스 추천 가능
연간	○	○	선수 라이선스 추천 불가 / 짐카나, 카트, 드리프트, 입문 포물러 등 기초 종목의 경우 챔피언십 대회 참가 가능
아마추어	X	○	

제3조 팀의 신청 자격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인 팀의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3.1 모터스포츠에 공헌하는 사업목적에 갖는 법인

3.2 공인 경기에 팀으로 참가하거나 할 계획이 있을 것.

3.3 자동차 경기의 제반 규칙에 정통한 자가 KARA의 회원으로 최소한 5명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단, 아마추어팀은 이에 미달했을 경우 사유에 대한 사무국 심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결정한다.

제4조 신청서류

팀으로 KARA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기존 팀도 매년 갱신된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의 서류와 비용을 제출한다.

4.1 KARA 소정의 신청 양식.

4.2 등록규정에 해당하는 비용.

제5조 팀의 신청

5.1 등록 신청서는 해당년도 공인경기 참가 전 우편, 전자 수단을 통해 KARA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KARA는 등록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5.3 팀 등록이 거부 될 경우에 비용은 반환된다.

제6조 심사

접수된 등록 신청서는 KARA 사무국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심사한다.

6.1 경기 참가능력과 팀 운영능력.

6.2 제반 규칙의 준수와 의무의 실행 능력.

6.3 기타 KARA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 자격의 제한

7.1 KARA 사무국은 등록을 신청한 팀의 자격을 심사, KARA가 정한 팀 등록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7.2 KARA 사무국으로부터 승인 받은 영구등록팀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1일부터 타인에게 양도·양수 할 수 없다.

제8조 비용

비용은 별도로 정한 표를 따른다.

제9조 인증서

팀 등록을 완료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팀은 KARA가 발부하는 인증서를 받는 때부터 자격이 인정된다.

제10조 팀 자격의 상실

팀 자격을 인정받은 팀에게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KARA는 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0.1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

10.2 정당한 이유 없이 참가 신청한 경기에 불참할 때.

10.3 KARA의 사무국에서 등록 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10.4 단기 등록팀의 경우 2년 이상 공식 경기 참가 기록이 없는 경우는 자격을 상실한다.

10.5 단기등록과 연간등록팀, 아마추어팀의 경우 해당연도 갱신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팀 자격이 상실된다.

10.6 민·형사상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10.7 10.4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팀이 재등록을 할 때는 등록비를 다시 내야 한다.

10.8 KARA가 금지한 대회 및 비공인대회에 참가하였을 때 자격상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10.9 팀의 권리와 명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하였을 경우

제11조 변동사항의 보고 의무

팀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는 등록 신청서에 기재(팀명 등), 첨부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 사유를 7일 이내에 문서로서 KARA에 보고하여야 하며, KARA로부터 인정받기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 권한

공인팀으로 등록된 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2.1 공인 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가지며 팀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된다.

12.2 공인 팀으로서의 정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2.3 영구등록팀은 선수 라이선스 국내 C와 B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고, 단기등록팀은 선수 라이선스 국내 C 유자격자를 추천할 수 있다.

12.4 프로그램 북 등 공식적인 팀 명 노출이 가능하다.

제13조 벌칙

KARA의 등록팀은 FIA의 국제스포츠규정, KARA의 국내스포츠규정, 동 부칙, 경기 특별규칙, KARA의 기관지나 KARA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포하거나 개정하는 KARA의 고시, 경기 주최허가, 부대조건, 공식통지, 트랙의 특별규정 중 어떠한 것이든 위반할 때에는 벌칙의 대상이 된다.

제14조 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